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3. 10. 28.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년 10월 15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2002년 10월 15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91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2년 10월 22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추진감)

- 가. 제정이유
 - 여성의 지위향상과 지역사회 참여활동의 활성화 및 복지증진을 위한 영등포구청의 여성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
- 나. 주요골자
 - 구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지역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여성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책무를 준수함(안 제2조)
 - 구민은 여성발전기본법 등 여성관련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구의 여성정책 수립 및 그 실현을 위해 협력해야 함(안 제3조)
 - 구청장의 여성정책결정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영등포구여성위원회를 둠(안 제4조)
 -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정책개발능력이 있는 자, 여성문제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을 갖춘 자, 여성관련 사회단체대표, 영등포구 의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20인 이내로 구성함(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최태성)

본 조례안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20인 이내의 「여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며,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에서는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본 조례에는 이러한 규정이 고려되지 않은 면이 있음. 동법 제29조의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는 규정이 본 조례에서 배제된 것은 개별적 조례에 의해 운용되는 각종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토록 시달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의안 번호	16
----------	----

제출년월일 : 2002. 10. 15.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정이유

여성의 지위향상과 지역사회 참여활동의 활성화 등 영등포구청의 여성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구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지역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해야 함(안 제2조)
- 나. 구민은 여성발전기본법 등 여성관련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구의 여성정책수립 및 그 실현을 위해 협력해야 함(안 제3조)
- 다. 구청장의 여성정책결정 자문하기 위해 영등포구여성위원회를 둔(안 제4조)
- 라.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여성정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활동 참여경력이 있는 자 및 정책개발능력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20인 이내로 구성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여성발전기본법 및 지방자치법 제15조
- 나. 예산조치 : 2003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음
- 다. 입법예고(2002.8.20.~2002.9.10.)결과 : 의견 없음
-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로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 여성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의 지위 향상과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방향) 구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지역사회 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 여성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3조(구민의 협력) 모든 구민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 여성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구의 여성정책수립 및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 2 장 여 성 위 원 회

제4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여성지위향상 및 지역사회 참여사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여성문제 및 복지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인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정책개발능력이 있는 자
2. 여성문제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을 갖춘 자
3. 여성관련 사회단체대표
4. 영등포구의회 의원

제6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의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여성복지담당주사가 된다.

③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정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제11조(의견청취 등)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기관, 단체 등을 통한 조사·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①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 연구를 할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보 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